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어린이 실내놀이터 및
영재교육원 추가 〉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895호)

2024.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어린이 실내놀이터 및 영재교육원 추가	3
※참고자료 1 :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유형	16
※참고자료 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의 어린이놀이시설	1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 · 한무경 · 金炳旭 · 이명수 · 정우택 · 김형동
지성호 · 유상범 · 류성걸 · 최연숙 · 김예지 · 이 용
김태호 · 김영선 · 김미애의원(15인)

나. 발 의 일 : 2023. 12. 12.

다. 회 부 일 : 2023.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중 학교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도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

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27호 등 신설).

Ⅲ. 검토의견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어린이 실내놀이터 및 영재교육원 추가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어린이 실내놀이터 및 영재교육원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56조, 제57조).

개정안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1조,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 ----- ----- ----- ----- ----- -----

현행	개정안
<신설> ② ~ ⑨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7. (생략) <신설>	타유원시설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업장 27.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영재교육원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56조제1항제26호 각 목의

현행	개정안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u><신설></u> ⑤ · ⑥ (생략)	<u>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업장</u> ④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56조제1항제27호의 영재교육원</u> ⑤ · ⑥ (현행과 같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기관의 업무 특성상 아

동·청소년을 대면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해당 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관에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¹⁾의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²⁾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업장,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영재교육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①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업장(이하 ‘키즈카페’라 함)을 살펴보면,

키즈카페 운영·종사자는 아동과 관련하여 놀이 과정에서 아동과 접촉할 개연성이 높고, 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1)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참고자료 2. 참조)

때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키즈카페의 경우 법령에서 그 정의 및 설치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유원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식품접객업(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으면 어린이놀이시설(행정안전부)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 기관에서 키즈카페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또한, 운영에 있어서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및 신고·등록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업종인 영업소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운영의 형태가 다양한 상황임. 참고로 서울과 경기도에 영업 중인 키즈카페는 각각 217개³⁾, 99개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키즈카페 개요 >

- 별도의 법적근거 없음
- 유원시설업(문체부) 또는 식품접객업(식약처)으로 등록할 수 있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있으면 어린이놀이시설(행안부)을 등록해야 함
 - 다만, 각 기관에서 키즈카페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개소 수 및 이용현황 파악은 어려움

<키즈카페 관련 부처 및 법령>

3)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029/S/1/datasetView.do>) 검색일 2023. 6. 9.

4) 경기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 검색일 2023. 6. 9.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설치前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도료·마감재료·토양·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5)에서 키즈카페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현행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 또는 점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키즈카페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되는 기관의 특성, 유사입법례,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

6) 참고로,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은 채용 시 및 연 1회 이상 취업자 등의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직원의 해임, 기관 폐쇄, 등록·허가의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키즈카페는 그 범위

다음으로,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6호7)의 영재교육원을 살펴보면,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8)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의미함.

현행법 제56조제1항제2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이미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⁹⁾이 고등학교 이하의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재교육원도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재교육원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직업의 자유도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

가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341호).

7)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8)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9)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과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¹⁰⁾, 취업제한 규정은 후자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법 제57조의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대상도 함께 정비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의 설치 업종인 기타유원시설업 및 어린이놀이제공업과 영재교육기관인 영재교육원에 성보호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다만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캠핑장, VR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지자체의 점검·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개정안 제26호나목에 따른 실내놀이터의 대부분은 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영업장이 주로 해당하며, 이 중 운영에 있어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및 신고·등록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업종인 영업소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업장 인가·신고 시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 및 연 1회 점검의 적정성 및 이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0) 현재 2010. 5. 27. 2008헌바110 참조

한국테마파크협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의 기타유원시설업은 탑승형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공간으로 보호자가 항상 동행 관찰하기에 보호자의 사전 감시 보호기능이 있고, 업종 운영상 어린이와 실제로 접촉하지 않는 업체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지나치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4

※ 참고자료 1 :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유형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근거법령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순복음총회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동시행령 제54조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위센터, 위스쿨	「초·중등교육법」제28조
국제학교	제주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교습소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공연시설	공연장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공연시설	영화상영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과학관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14,19조
수목원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항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시행령제17조 제8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아동복지법」 제37조의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아동복지법」 제37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주택법」 제2조제3호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 법인	「경비업법」 제2조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청소년게임제공업	오락실 등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제2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목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제1항제18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제28조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등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 28조
「지방자치법」 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지방교육자치법」32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 참고자료 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상의 어린이놀이시설[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